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변경 보고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6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변경 내역을 보고합니다.

1.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명칭
   : 코펜 골디락스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2. 보고일[변경일] : 2021-03-23 〔2021-03-18〕, 최초설정일 : 2019-03-21

3. 집합투자업자 명칭 : 코펜자산운용(주)

4. 변경사유 : 신탁계약서[규약] 일부 변경[신탁계약기간연장 등]

5. 변경내용 : 신탁계약기간연장 및 단위형에서 추가형으로 변경

변경전	변경후
제2조(용어의 정의) ~ 중략 ~ 6. "단위형"이라 함은 추가로 자금 납입이 불가능한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제3조(투자신탁의 종류 및 명칭 등) ~ 중략 ~ 3. 단위형 제5조(신탁계약의 효력 및 신탁계약기간) ~ 중략 ~ ③ 이투자신탁의계약기간은투자신탁의최초설정일로부터2년간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중략 ~ 6. "추가형"이라 함은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제3조(투자신탁의 종류 및 명칭 등) ~ 중략 ~ 3. 추가형 제5조(신탁계약의 효력 및 신탁계약기간) ~ 중략 ~ ③ 이투자신탁의계약기간은투자신탁의최초설정일로부터3년간으로 한다.
	(부칙) 시행일 : 2021년 3월 18일

붙 임 :
1.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변경 보고서
2. (변경)집합투자규약 및 변경전후 대비표
3. 수익자동의서

코펜자산운용(주) 대표이사 (인)

작 성 자 :	안수영(이사)
전화번호 :	02-2135-3271

(붙 임)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설정 보고

1.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가.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코펜 골디락스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1호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K553W3CN5689)

나.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형태 및 구조

①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② 특수형태 : 해당사항 없음
③ 기타 : 혼합자산형 집합투자기구, 폐쇄형, 추가형, 사모형,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다. 집합투자기구의 계약(존속)기간

최초설정일로부터 3년간

주1)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2. 투자목적·투자방침 및 투자전략에 관한 사항

① 투자목적 : 이 투자신탁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달리 정한 한도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대상자산의 취득한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다양한 투자대상자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극대화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투자전략

㉠ 기업인수·합병을 위한 사모전문투자회사(PEF) 등을 통한 고수익 창출

㉡ 기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투자가능한 증권 등에 투자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시행령 제271조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 해당여부 : 이 투자신탁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가입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자에 한한다.

1. 전문투자자로서 법시행령 제271조제1항에서 정하는 투자자
2. 1억원(이하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을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 그 밖의 단체(「국가재정법」별표2에서 정한 법률에 따른 기금과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3. 투자위험요소에 관한 사항

원본 손실 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증권 등 가격변동 위험	투자대상 증권의 발행회사 영업환경, 재무상황, 신용상태 악화 및 시장에서의 증권 수급상황 등의 이유로 인해 투자대상 증권의 가격하락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투자신탁이 해외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해외시장의 지정학적 위험 및 증권의 가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관련 증권시장의 법령 및 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시장위험	이 투자신탁은 해당 증권시장 전체의 가격하락 또는 이자율 변동 등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 위험에 노출됩니다. 경제성장률, 환율, 금리변동의 요인들은 증권시장 전체에 영향을 끼쳐 개별 증권가격의 등락을 초래하며 이는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 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해외투자 자산은 필연적으로 국내통화와 투자대상국 통화와의 환율변동에 따르는 위험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환율 변동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가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율변동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위험 노출을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의 10% 수준으로 관리할 것입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제약요인들 에 의해 부분 환헤지의 효과가 상쇄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헤지하는 금액 : 이 금액은 투자대상 주식의 주가의 변동성, 자산배분의 변화, 투자신탁의 추가 설정이나 부분 환매 또는 외국통화로 지급되는 각종 비용 등으로 인해 매일 변할 수 있습니다. 2. 헤지할 통화의 유동성 및 헤지 비용 3. 외환시장의 붕괴 또는 일상적인 통제수준을 넘는 외환시장의 충격사건으로 인해 정상적인 거래나 정상적인 가격 형성이 곤란한 경우 4. 관련 법령 제한 또는 규제 변화 등 5. 선물환거래 상대방의 부도
환매대금 지급과정에서 발생하는위험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의 환매신청에 따른 환매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수익자의 환매신청일과 환매적용기준가 산출 시점과의 차이로 인하여 손실 또는 이득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용실적 위험	과거 운용실적은 과거의 운용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정가액산정 위험	시장가격이 없는 자산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공정가액 산정방법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자산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정가액이 시장가치와 정확히 상응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신용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자산인 증권의 거래에 있어서 발행회사에 대한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악화, 신용상태 악화 등의 원인으로 신용도 하락, 채무 불이행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원금과 이자에 대한 회수 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투자신탁 의 환매연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조세 및 규제 등 제도적 위험	국내 법률, 조세 및 규제 등의 정책이나 제도변경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 다.
운용프로세스 위험	집합투자업자는 일반적으로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용프로세스를 운영합니다. 집합투자업자에게 부여 된 임의재량에 의한 투자활동의 결과는 집합투자업자의 능력에 좌우되고 특히 적절한 투자기회를 식별하고 성공적으로 투자전략을 이행하는 펀드매니저의 능력에 의존합니다. 펀드매니저는 당해 투자신탁 뿐만 아니라 다수의 다른 투자신탁의 운용을 담당할 수 있고 또한 담당 펀드매니저의 퇴직 등으로 신탁계약기간 도중에 담당 펀드매니저가 변경될 위험이 있습니다.
기준가격 산정오류 위험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반사무관리회사, 채권평가회사, 판매회사 등 관련 기관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인하여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오류가 1000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가 산정 오류가 이러한 오차범위 이내에서 발생한 경우 당해 투자신탁을 청약하거나 환매한 투자자, 기존 투자자들 사이에 서로 다른 경제적 가치를 수령할 수 있습니 다.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은 해외 주식 및 채권 등 다양한 투자상품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 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일부 신흥시장의 증권은 외국인의 투자 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거래소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고, 선진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신탁과 비교하여 가격변동의 위험이 더 클 수 있고 환매가 정지될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변동성은 정치적 경제적 요인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법률, 거래유동성, 결제, 증권의 양도 및 통화 등의 요소들에 의해서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해외증권에 투자할 경우 해당 증권이 특정 국가에 상장되어 거래됨에 따라 특정 외국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 배당소득, 세후 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 투자위험	전환사채는 채권 및 주식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가지 증권으로서 관련된 위험 및 전환증권으로 서 가지는 특수한 위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전환사채는 주식으로의 전환권이 부여되어 있어 일반사채 대비 표면금리가 낮을 수 있으며,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른 주식가격 변동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환사채의 가치는 경제 및 이자율의 상황, 발행인의 신용도, 기초주식의 성과 그리고 전반적인 자본시장 상황에 따라 크게 변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환사채의 발행인이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거나, 발행인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는 기초주식보다 유동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초주식이 상장폐지되는 경우 유동성이 급격히 하락할 수 있습니다.

국내 법규 및 제도 변화 위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규의 변화는 당해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정책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배당률과 수익률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펀드 회계 관련 위험	펀드 회계에 대해서는 관련 회계준칙, 신탁회계기준 등에 의거하여 최대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계리되도록 할 방침이나 해외 비상장기업 및 펀드 투자로 인한 제약조건(지분 등의 공정가액 확인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인해 관련 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소송 관련 위험	투자 기업의 기술 혹은 지적재산권, 지분구조 등 관련한 다양한 소송이 제기될 수 있으며, 일부 소송은 본 국내 및 해외펀드의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국내펀드 운용인력 관련 위험	핵심 운용역이 운용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거나 펀드의 해산까지 재직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인지되지 않은 위험	본 리스크 분석은 작성 당시에 파악된 위험요소를 최대한 반영하여 분석하였으나, 이후 작성 시점에 통상 인식되지 않은 잠재된 위험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인 경우에는 발기인과 감독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감독이사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및 주요 업무

① 회사명 : 코펜자산운용(주)
② 설립일 : 2018년 3월 23일
③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등록일 : 2018년 06월 20일
④ 대표이사 : 김홍달
⑤ 주요 사업영역 : 적격투자자 대상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업무
⑥ 설립자본금 : 24억원
⑦ 주주현황 : 이효숙 100% 출자
⑧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601, 3층(대치동, 보성빌딩)
⑨ 홈페이지 : http://www.kopenasset.com

나. 발기인 및 감독이사에 관한 사항 (투자회사인 경우에 한한다)

해당사항없음

5.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가. 투자대상

투자대상	취득한도	투자대상자산 세부설명
주식	제한없음	1.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 2.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3. 코넥스 상장주식
채권	제한없음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 CB/BW/EB 등 주식관련 사채
집합투자증권	제한없음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 189 조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법 제 196 조에 의하여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증권대여	투자신탁보유 증권총액의 50% 이하	투자신탁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
금전차입 및 증권의 차입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의 50%이하	단, 전담중개업자(프라임브로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금전차입 및 증권차입의 합계액은 투자신탁 순자산 총액의 200%를 초과할 수 없다.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 분	1내 용
레버리지비율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이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의 2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가.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그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나. 투자신탁재산으로 이 투자신탁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채무보증액 또는 담보목적물의 가액 다.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계열회사 발행 증권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수익자 또는 수익자의 특수 관계인이 발행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투자증권의 취득	이 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으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그 수익자 또는 수익자의 특수관계인이 발행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투자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증권 및 금전차입	증권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다만, 다만, 전담중개업자(프라임브로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금전차입 및 증권차입의 합계액은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의 200%를 초과할 수 없다.

6. 신탁업자에 관한 사항

① 회사명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②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0
(연락처 : 02-768-7988)
③ 회사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 https://www.nhqv.com/
④ 주요 업무
1.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2.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3.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4.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평가 등에 대한 점검
5.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 등의 수령
6.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7. 종합금융투자사업자(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전담중개업무를 제공받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관한 사항

① 회사명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②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0
(연락처 : 02-768-7988)
③ 회사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 https://www.nhqv.com/
④ 주요 업무
1. 신용공여
2.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3. 증권의 대차 또는 그 중개·주선이나 대리업무
4. 투자자재산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의 집행업무
5. 투자자재산의 매매 등의 거래에 따른 취득, 처분 등의 업무
6. 파생상품의 매매 또는 그 중개·주선·대리업무
7. 환매조건부 매매 또는 그 중개·주선·대리업무
8. 투자자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금융 및 재무 등에 대한 자문업무
9. 투자자재산의 매매거래에 대한 청산 및 결재업무
10. 투자자재산에 대한 자본 또는 지분의 참여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에 부수한 업무

■ 첨부서류

1. (변경)집합투자규약
2. 변경 전·후 조문 비교표
3. 수익자 동의서

※ 변경 보고시에는 변경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 첨부